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 안내문

□ 거리제한 유예 조건부 담배소매인은 기존 담배*는 판매할 수 없으며, 위반시 소매인지정 취소 대상임

○ **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 (일반 담배, 궐련형 전자담배 등)**

□ **거리제한 유예 조건부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**는 담배사업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**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시점(2028. 4. 24.)에 소매인의 지정이 자동 취소(실효) 됨**

※ 거리제한 유예적용 담배소매인 지정 유효기간 : ~ 2028. 4. 23.

○ **2년 도과시점에 거리제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**, 계속해서 담배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**거리제한 요건 등을 충족하여 별도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절차를 거쳐**,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(일반소매인) 또는 7조의3제3항(구내소매인)에 따른 **담배소매인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함**

○ **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여 소매인의 지정이 자동 취소되었음에도 담배 등의 판매를 계속하는 경우** 담배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**벌칙(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) 대상임**

□ **담배소매인(담배자판기 등 포함)은** 담배사업법, 국민건강증진법 등 **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**하여야 함

○ **영업소 위치 변경 등** 지정내용과 다르게 **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**, 행정청에 **변경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함** (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)

- **담배자동판매기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 시 규제대상임**
  (국민건강증진법,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)
  ① **절대보호구역 내 :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불가**
  ② **상대보호구역 내 : 지역위원회의 심의 통과 시 설치가능**

○ 휴·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**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**,

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,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행정처분(영업정지, 지정취소) 대상임 (담배사업법 제17조)

○ **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됨** (담배사업법 제12조)

○ 담배소매인 일제정비 등을 사유로 **관련자료(담배매입 기록 소명자료 제출 등) 요청 시,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**(담배사업법 제24조)

□ **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·수입된 담배(전자담배)는** 가급적 **법시행일 이후 판매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**

○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후 제조·수입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**별도의 식별조치 방안** 및 **재고제품에 대한 유해성 평가 등을** 추진할 계획(기획재정부)

○ 판매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**기존 제품 재고는 유해성 평가**를 **완료한 제품**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음

○ 새로이 담배로 포함되는 제품에 대해 담배사업법 등에 따라 **적법하게 제조업 허가 및 담배수입판매업 등록**한 업체에 **물품을 공급**받아 판매하여야 하며, **위반 시 담배사업법 제12조 제3항 및 제28조에 따라 과태료**(200만원 이하 과태료) **부과 대상**임

수원시 권선구청